

이 보도자료는 2020. 1. 15.(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정효삼

전화 061-725-8703 / 팩스 061-725-4315

보도자료
2020. 1. 15.(수)

제 목

여수산단 내 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1조 제1항)
- 공판에서 현출되기 전이라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제11조 제2항 제3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 혐의사실 요지, 불기소이유 요지,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제10조 제3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형사2부장 검사 김형주)**은 2019. 4. ~ 2020. 1.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여수산단 내 입주업체들의 대기측정기록 조작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 총 25개 배출업체(30개 사업장) 및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100명에 대하여
- 배출업체 임직원 3명,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총 5명을 구속구공판하고,
- 배출업체 임직원 68명 및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10명(법인 4개 포함) 등 78명을 불구속구공판하고,
- 배출업체 직원 7명, 관련업체 대표 1명 총 8명을 약식명령 청구하고,
-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9명을 혐의없음 처분 하였음

■ 1차 수사('19. 4.~ '19. 8.) 당시 총 40명을 처분(4명 구속구공판, 27명 불구속구공판, 7명 약식명령 청구, 2명 혐의없음) 하였고, 2차 수사('19. 10.~ '20. 1.)에서 총 64명을 처분(1명 구속 구공판, 55명 불구속구공판, 1명 약식명령 청구, 7명 혐의없음) 하여 총 100명(4명은 추가기소)에 대한 수사를 종료함

1 주요 수사 경과

- '18. 5.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 내사 착수
- '19. 4. 환경청, 사건 일부 송치
 - 12개 배출업체(14개 사업장), 4개 측정대행업체
- '19. 7. ~8. 1차 수사 종료, 중간수사결과 발표(7. 19.)
 - 7개 배출업체(8개 사업장) 및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4명 구속기소, 34명(법인 2개 포함) 불구속 기소, 2명 혐의없음
- '19. 10. 환경청, 사건 추가 송치(16개 배출업체, 2개 측정대행업체)
- '19. 11. 지역의견 청취 간담회 (11. 13.~11. 14.)
 - 기업단체, 시민단체, 학계 관련자 등 참석
- '19. 12. 31. 검찰, B업체 소속 직원 B1(구속) 등 6개 배출업체 관련 22명 처리
- '20. 1. 14. 검찰, 14개 배출업체 관련 45명 처리

2

처리결과

1] 피의자 및 피의사실 요지

● 피의자 : 총 100명

<1차 수사 ('19. 4. ~ '19. 8.)>

- 7개 배출업체 직원 33명, 2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7명(법인 2개 포함) 등 40명

<2차 수사 ('19. 9. ~ '20. 1.)>

- 21개 배출업체 직원 52명, 3개 측정대행업체 직원 11명(법인 3개 포함) 등 63명
- 기타 관련자(관련업체 대표) 1명

※ 측정대행업체 직원 4명과 3개 배출업체는 1차 수사시 기소되지 못한 부분 추가기소

● 피의사실 요지

- '15. 1. ~ '18. 12. 배출업체 측과 측정대행업체 측이 공모하여, 각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결과를 실제 측정결과보다 낮게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위반(이하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일부 피의자의 경우 측정대행 수수료를 부풀려 허위로 배출업체에게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기 혐의, 거래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은 배임수재 혐의 등 추가 의율하고, 배임수재 상대방을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

☞ 2차 수사 관련 [주요 피의자별 피의사실 요지] 참조

② 처리 결과

<1차 수사>

- 배출업체 임원 2명 및 측정대행업체 대표 2명 총 4명 :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구공판
- 배출업체 임직원 22명 및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법인 2개 포함) 총 27명 :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 배출업체 직원 7명 :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
- 배출업체 직원 2명 : 혐의없음 처분

<2차 수사>

- 배출업체 직원 1명 :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구공판

※ 검찰에서 범행의 중대성, 혐의 인정 및 증거인멸 여부 등을 고려하여 '19. 12.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에서 그중 1명에 대한 영장 발부,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 기각

- 배출업체 직원 46명 및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9명(법인 3개 포함) 총 55명 : 환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 관련업체 대표 1명 : 배임증재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
- 배출업체 직원 5명 및 측정대행업체 직원 2명 등 7명 : 혐의없음 처분

3

제도 개선 건의

①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본 사건과 같이 대기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기록조작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기준초과 배출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인 요건(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하에서만 처벌이 가능한바, 국민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에 의한 기준초과 배출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이 필요함

②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에 대한 신고의무 신설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즉시 이를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연 0.5~5회에 걸쳐 소수의 관공서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행 지도·점검만으로는 즉각적인 파악이 어려우므로, 배출사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③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 배출업체 뿐 아니라 측정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한바, 감독관청의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시 전문인력을 필수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별첨]

[주요 피의자별 피의사실 요지]

순 번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처리결과
<1> A 측정대행업체 [2,776회]¹⁾			
1	A1 대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2 또는 A3, 13개 배출업체 측과 공모하여 '15. 1. ~ '19. 1. 총 2300회(측정없이 임의기록 255회, 실측값 조작 2045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A2 또는 A3와 공모하여 '15. 1. ~ '18. 11. 총 476회에 걸쳐 46개 배출업체에 관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p>불구속 기소 ('19. 12. 31.) ('20. 1. 14.)</p> <p>※ '19. 7. 2. 구속 기소</p>
2	A2 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13개 배출업체 측과 공모하여 '15. 1. ~ '19. 1. 총 2224회(측정없이 임의기록 255회, 실측값 조작 1969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A1과 공모하여 '15. 1. ~ '18. 11. 총 453회에 걸쳐 45개 배출업체에 관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B1과 공모하여 '16. 11. ~ '18. 11. B업체에 측정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9,500만 원을 편취 [사기] 	<p>불구속 기소 ('19. 12. 31.) ('20. 1. 14.)</p>

1) 업체 전체 거짓기록 횟수

3	A3 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1개 배출업체 측과 공모하여 '15. 1. ~ '16. 12. 총 76회에 걸쳐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A1과 공모하여 '15. 1. ~ '16. 10. 총 23회에 걸쳐 1개 배출업체에 관해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19. 12. 31.) (‘20. 1. 14.)
4	A법인	법인 대표, 이사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 위반행위를 함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기소 (‘19. 12. 31.) (‘20. 1. 14.)
<2> B 배출업체 [268회]			
1	B1 '16. 10. ~ 현재 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등과 공모하여 '16. 10. ~ '18. 12. 총 157회(측정없이 임의 기록 4회, 실측값 조작 153회)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에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A2와 공모하여 '16. 11. ~ '18. 11. B업체에 측정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9,500만 원을 편취 [사기] - '15. 7. ~ '19. 2. D업체 대표 D1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약 3,600만 원을 수수 [배임수재] <p>※ D업체는 폐기물처리 업체</p>	구속 기소 (‘19. 12. 31.)
2	B2 '12. ~ '16. 10. 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1 등과 공모하여 '15. 1. ~ '16. 10. 총 111회에 걸쳐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A2와 공모하여 '15. 2. ~ '16. 10. B업체에 측정수수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약 3,400만 원을 편취 [사기] 	불구속 기소 (‘19. 12. 31.)
3	D1 관련업체 대표	'15. 7.경 ~ '19. 2.경 위 B1에게 B업체의 폐기물처리 위탁업체로 D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600만 원을 지급 [배임증재]	약식 기소 (‘20. 1. 14.)

<3> C 배출업체 [958회]

1	C1 부장	A1, C2 등과 공모하여 '15. 1. ~ '18. 12. 총 958회에 걸쳐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19. 12. 31.) ※ '19. 12. 19. 구속영장 법원 기각
2	C2 과장	A1, C1 등과 공모하여 '15. 1. ~ '18. 12. 총 958회에 걸쳐 측정값을 조작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이로 인해 공무원의 지도점검 등 업무를 방해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불구속 기소 (19. 12. 31.)